

2017년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관리」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시행계획

2017. 4.

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교	육	부	법	무	부
농림축산식품부	환	경	부	해	양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	세	청	산	부	부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16년도 추진실적	2
III . '17년도 시행계획	7
IV . 향후계획	18

< 별첨자료 >

1. '16년 추진실적 세부사항
2. '17년 시행계획 세부사항

I . 추진 배경

-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관계 부처의 '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17년 시행계획을 점검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 수립('14.12)

- 국무총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중앙행정 기관의 식품안전관리 계획을 종합,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제3차 기본계획 개요

- ♣ 4대 추진전략과 60개 과제로 구성

- ① 위해요소 사전예방 : 15개 ②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확대 : 12개
- ③ 상시안전관리 강화 : 20개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13개

* 식약처 35, 농식품부 6, 해수부 1, 교육부 2, 환경부 1, 부처공동 15

□ 연도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11.30) → 시·도지사(12.31) → 중앙행정기관 장(2월말) → 국무총리

**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국무총리가 평가한 결과를 반영

- (추진실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추진실적을 평가

* 시·군·구청장(1.15) → 시·도지사(1.31) → 중앙행정기관 장(2월말) → 국무총리

Ⅱ. '16년도 추진실적

1 총 괄

□ (시행계획) '16년도에는 4대 분야 122개 세부과제 추진

- ① 위해요소 사전예방 : 33개 ②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 21개
 ③ 상시 안전관리 강화 : 47개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21개

* 식약처 68, 농식품부 27, 해수부 18,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 (추진실적) 122개 세부과제 중 120개 세부과제는 정상추진 되었으나, 2개 세부과제는 미흡 또는 지연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실적 부진,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개선 과제 추진 지연

세부과제	미흡 내용·사유 및 대책
1-1-3-① (식약처) HACCP 인증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내용) 전반적인 HACCP 인증실적은 양호했으나, 축산물 분야 인증 실적(13.6%)이 목표(13.9%) 대비 다소 미흡 ○ (미흡사유) 영세업체 영업부진, 가축질병발생 등의 영향으로 인증 실적 다소 저조 ○ (향후대책) 영세업체를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 및 HACCP 의무화 영업장 시설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인증 확대
2-3-4-① (농식품부) 농산물 인증·표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내용) 포장 농산물 권장 품질 표시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표시 대상이 아닌 일반 포장 농산물에 대해 품질표시(품종, 등급, 당도, 산도)를 권장하고 기준 및 방법을 마련(사후관리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표시 확산 유도) ○ (미흡사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개정 법안이 폐기된 후 재입법 지연 ○ (향후대책) 연내 재입법 추진 및 시행('17.3.15, 국회제출)

2

추진성과 및 평가

가 추진성과

< 주요 성과 >

◆ 생산-유통-소비 등 식품의 공급단계별 체계적 안전관리 등을 통해 식품안전체감도 지속 상승

* 식품안전체감도(%) : ('13) 72.2 → ('14) 73.2 → ('15) 79.6 → ('16) 84.6

◆ 식품위해사범 단속 확대 등 불량식품 근절 강화로 위생불량 업소 발생률 감소

* 합동감시실적(개소) : ('13) 3,748 → ('14) 32,132 → ('15) 10,203 → ('16) 11,704

* 위생불량업소 발생률(%) : ('13) 6.9 → ('14) 3.3 → ('15) 3.2 → ('16) 2.7

□ 위해요소 사전 예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대상 지속 확대

- (GAP) 1지자체 1GAP 작목반(142개 구성) 등을 통한 GAP 농산물공급 및 위탁급식업체(아워홈, ECMD)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요 확대 추진

* GAP 인증비율(% , 전체농가수 대비) : ('15) 4.8 → ('16) 6.9

- (HACCP) 집유업 등 업종 및 업체 규모를 고려한 단계별 의무 적용 추진 등을 통하여 지속 확대

* HACCP 인증수준 : (식품) '15 : 3,734개/14.8% → '16 : 4,358개/17.3%

(축산물) '15 : 10,257개/12.5% → '16 : 11,208개/13.6%

○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제 시행 및 현지실사 강화

-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체 정보(업체 소재지, 생산품목, HACCP 적용 등)를 사전등록한 후 관세청 수입신고와 연계 관리('16.2~)

* '16.12월 기준, 167개국 69천개(가공식품 48, 축산물 12, 수산물 9) 업체 등록

- 부적합 이력, 수입물량이 많은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 ('14) 16개국 71개소 → ('15) 10개국 78개소 → ('16) 333개소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대상 지속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매출액 100억원 이상) 및 식품 판매업소(매장면적 300㎡이상)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개소) : ('14) 1,282 → ('15) 3,287 → ('16) 5,901

□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는 경우 주요 원재료(함량 1~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 원산지 표시제도 표시대상 확대 및 관리 강화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기존 16종*+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및 표지판(A4 → A3)·글자크기(30pt → 60pt) 확대

* 기존 16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쌀, 배추, 고춧가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통신판매업체(G마켓, 홈쇼핑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책임 강화

- 위반업체 외 판매의뢰한 통신판매업체 정보를 관련기관 홈페이지(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추가 공개

* 통신판매업체 위반 현황(농관원·수과원, 건): ('14) 77 → ('15) 64 → ('16) 24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관리사각 지대에 있던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설 및 특송화물 대상 식품검사 시범사업을 국제항공우편물까지 확대

* 국내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사이버몰 등의 식품구매를 대행하는 영업

** 특송화물·국제항공우편물 검사 강화(건) : ('15) 505 → ('16) 3,000

○ **위해우려식품 선별 능력 제고**

-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사전 분석하는 **사전예측검사 시스템***을 통해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을 표적 검사**

* 사전예측검사시스템 적용 부적합률 0.6%(전체 부적합률 0.4%)

○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

- 폐광지역 등 **오염우려지역 농산물, 계절별 위해 우려 수산물** (굴 등)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 차단·폐기

*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33,770건 검사, 1,177건 부적합(출하연기·폐기), 수산물 패류독소·대장균 등 10,646건 검사, 199건 부적합(출하제한·폐기)

-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행**

* 150개 품목 12,440건 검사, 1건 부적합(중국수입 건능이버섯)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2차 나트륨 저감화 종합계획'**^{*}('16.3, 국무회의) 및 **'제1차 당류 저감화 종합계획'**^{**} 수립('16.4)

* '20년까지 1일 나트륨 섭취량 3,500mg 달성 목표('16 현재 3,850mg)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열량을 '20년까지 전체 섭취열량의 10%이내 관리

○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방법 등 개선**

- 소비자 관심도를 반영하여 **영양성분을 표시*** 하도록 하고 **표시 단위****도 실제 구매 단위에 맞게 개선

* 표시방법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 열량, 나트륨, 당류 등

** 표시단위 : 1회 제공량 → 총 내용량(사례 : 6개 짜리 냉동 핫도그의 경우 1개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였으나, 6개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변경)

-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섭취가 저조한 비타민 D 섭취 기준을 상향 조정**

나 미흡한 점

-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는 높은 편이나 수입식품, 학교 주변 판매식품 등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16년도 식품안전체감도(%) : 전체 84.6, 수입식품 55.2, 학교 주변 판매식품 60.0

☞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및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위해요소 사전예방의 핵심요소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은 확산 추세이나, 보급 수준*은 아직 미흡

* (HACCP) 식품 17.3%, 축산물 13.6% * (GAP) 전체 농가수 대비 6.9%

- 식품 표시·광고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기준·방법·절차 등은 근거법령에 따라 상이, 소비자 혼란 우려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각각 표시·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표시 원칙 및 절차, 대상, 제공정보 등에서 차이

☞ 표시 원칙 및 절차, 대상, 제공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의증진 및 혼란을 방지할 필요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구축·운영('15.5~)이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등 활용 미흡

☞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고 홍보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필요

☞ (조치) '17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식품안전관리 개선·강화

Ⅲ. '17년도 시행계획

1 추진 방향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목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제고

추진
전략
및
과제

위해요소 사전예방

-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미래대비 선제 대응
- 국민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 식품안전관리 국제 경쟁력 제고

상시 안전관리 강화

-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 불량식품 근절
- 식습관 반영 기준·규격 재평가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지원
-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 세부구성 >

♣ '17년도 시행계획은 4대 분야 121개 세부과제로 구성

- ▶ 위해요소 사전예방 : 32개 ▶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 20개
-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47개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21개

* 식약처 68, 농식품부 27, 해수부 17, 교육부 3, 환경부 3, 관세청 2, 법무부 1

2 시행계획 주요 내용

가 위해요소 사전예방

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지속 확대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및 컨설팅 사업 연계를 통한 집단 인증 유도,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GAP 인증 확산
 - * 품목별 GAP 전문가 육성, GAP 사이버강의(영양사) 개설, 유통관계자 교육 등
 - GAP 유통활성화 실무협의체 운영,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GAP 우수농장 팸투어 등을 통한 대량수요처의 GAP 농산물 취급확대 유도
- HACCP 적용 업체 지속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순대, 알가공업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등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HACCP 단계적 의무화 추진 계획

◆ 집유업('16), 순대·알가공업('17)은 대상규모에 상관없이 조기 의무화

구분	단계	시행시기	대상규모	업체수
다소비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 (7,603개소)	1	'14.12.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인면서 종업수 51인 이상	230
	2	'16.12.1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인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542
	3	'18.12.1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인면서 종업원 6인 이상	1,194
	4	'20.12.1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6,142
유가공업 (299개소)	1	'15.1.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인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59
	2	'16.1.1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인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44
	3	'17.1.1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인면서 종업원 6인 이상	48
	4	'18.1.1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148

* 8개 품목 : 어육소시지, 과자,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국수·유당면류, 즉석섭취식품

- HACCP 인증이 어려운 영세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해 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신규 도입·추진('17~)

* HACCP 원칙(Software)은 적용하되, 시설 등 선행요건(Hardware)은 적용 배제하여 부담 완화(식품 19,832, 축산물 4,117 등 23,949개소 적용 추진)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적용 대상 업종 지속 확대

- 영유아식 ('17.12) 및 조제유류('18.6) 이력추적 관리 전면 의무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추진 일정

구 분	'14.12.	'15.12.	'16.6.	'16.12.	17.6.	'17.12.	18.6.
영유아식	50억이상	10억이상	-	1억이상	-	1억미만	-
조제유류	-	-	-	50억이상	10억이상	1억이상	1억미만
건강기능식품	50억이상	-	10억이상	-	-	-	-
식품판매업소 (매장면적)	1,000㎡ 이상	500㎡ 이상	-	300㎡ 이상	-	-	-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업소 지속 확산

- 위해식품 발생시 판매전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POS*가 설치된 모든 식품판매장(8만개소)에 도입·적용

* POS(point of sale) : 판매시점관리기(리더기)

- 식자재 공급업체 물류유통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범위 지속 확대('17~)

②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대상 품목 확대 추진

- '16년도 수입단계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중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을 검토하여 검사명령제* 대상 확대('17.6)

* 수입 신고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사전 첨부하고 반입시마다 정밀검사하는 제도로 파키스탄 향신료(씻가루) 등 4개 품목 적용 중

- 지정검역물(소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허용 절차 개선
 - 수입허용결정* (농식품부) 후 수입위생평가(식약처)를 실시토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검토·평가를 병행 추진
 - * 수입허용결정절차 : 축산물 위생 설문서 작성·송부 → 축산물 위생 답변서 검토 → 축산물위생실태 현지실사 → 수입허용여부 결정
- 수입위생조건 미이행시 수출국 정부 등에 대한 조치 강화
 - 수입품목 반송조치 외 수출국 정부에 시정요청하거나 해당 작업장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17.4~)

③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조치 강화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성 제고
 - (국민) 주변 음식점(위생등급 포함), 식품제조업체 등 지도 기반 정보제공 확대 등
 - (업체) 영업자 준수사항안내*, 우리회사 자율점검결과 보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 지원
 - * 자가품질검사, 위생교육이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사전 통보
 - ** 위생교육, 수질검사, 방충·방서시설 등 기본안전사항 자율준수결과 보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성요소 및 주요내용

구성요소	주요 내용	사용 대상
① 식품안전정보포털 (대국민포털)	▶ 식품 관련 행정정보, 민원신청, 상담·질의, 산업체 정보서비스 등 제공	일반국민, 산업체
② 식품행정통합 시스템	▶ 영업 허가·신고 및 식품안전관리 행정 업무를 지자체와 연계, 실시간 업무처리	식약처, 지자체
③ 식품정보활용 시스템	▶ 12개 부처의 159종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여 부처간 공유하는 활용체계 구축	정부부처, 지자체
④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 수립	▶ 식품업체와 품목(제품)에 국가고유구분번호 부여와 품목분류 등 표준코드 마련	정부부처

* 식약처, 농식품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식품안전정보 연계·통합('15.5~)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광고 노출성이 높은 지상파 TV·라디오, 포털·SNS 및 지하철·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박람회·기념식 등 홍보 부스 운영 및 대국민 참여 이벤트 실시

4 농·축·수산물 안전성 강화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 미등록 농약은 미검출 수준으로 관리(0.01mg/kg)하여 농산물 안전 관리 강화
 - * 견과종실류(참깨 등 26품목)·열대과일류(키위 등 14품목)가 대상이며, 식약처 기준 설정 농약(1,895종)만을 사용·판매토록 농업인·농약상 등 교육·홍보 강화
- 전국 연안 패류양식장 바이러스·독소 관리 강화
 - (노로바이러스) 남해안 패류양식장 15개소를 월 1회 정기 조사 하되, 굴 생산시기(11월~익년 4월)에는 격주 조사, 검출시 매주 조사
 - (독소) 전국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연중 모니터링* 하고, 독소 검출시 주 1회, 기준초과시 주2회 실시
 - * 월2회 이상(1~2월, 7~12월), 월1회(3~6월) 이상 모니터링하여 패류독소 발생 상황 공개(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나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 확대

1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식품테러 등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적용 내재화
 - 식약처·지자체·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17.5) 및 워크숍 개최('17.6)
- 위기대응 매뉴얼 고도화 추진
 - 위기사항 발생시 메시지의 구체성을 보완, 국민 혼란 및 부정여론 확산을 사전 방지하고 위기단계 판단기준 개선 등 검토* 추진
 - *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식약처, '17.1)

② 미래대비 선제 대응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지속 확보

-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어 안전성 재확인 대상*중 '17년 재심사 대상 1개 품목(해충저항성 옥수수 MIR604)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

* 상업적 생산 중단 품목, 후대교배종 등을 제외한 79개 품목

- 유전자변형식품에 도입된 단백질 44종에 대한 알레르기 안전성 검증 추진

* '16년까지 36종 완료, '17년-'18년 각각 4종 검증

○ 신종, 변종 식품위해인자 관리체계 기반 마련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신종·변종 위해인자*의 출현, 변화에 대한 예측 연구 및 사전 대응 방안 마련

* 온도, 습도 등의 변화로 인해 출현 가능한 위해인자(패류독소, 곰팡이 독소 등)

③ 국민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용기구 구분표시제도' 단계적 확대

식품용 기구 구분표시제도 적용 확대 계획

2015	2016	2017	2018	표시방법
금속제 ▪ 가위, 집게 ▪ 식품용삽 ▪ 컵, 톱니칼날 ▪ 거름망 등	고무제 ▪ 고무마개 ▪ 고무장갑 ▪ 고무젓꼭지 ▪ 고무줄 등	합성수지제 ▪ 일회용장갑, 봉투 ▪ 합성수지대야 ▪ 양념분무기 ▪ 노끈 등	▪ 도자기제 ▪ 유리제 ▪ 전분제 ▪ 목재류 ▪ 범랑 및 용기류 ▪ 종이제, 가공지제 ▪ 셀로판제 ▪ 2가지 이상 재질로 구성된 제품	

○ 식품 표시·광고 규정 통합

-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통합하고 표시 원칙, 절차 및 대상, 제공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각각 규정 (개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17.3)

④ 식품안전관리 국제경쟁력 제고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평가 강화 및 지도·점검 체계 개선

- 시험·검사기관의 조직운영, 시설·장비, 시험검사품질 등을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대상(사후관리)을 모든 민간 검사기관(95개)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점검*

* 우수기관(90점 이상)은 2년 1회 점검, 보통(80점 이상 90점 미만)은 1년 1회 점검

○ 국내 할랄산업 육성 지원

- 국내 식품 등 95개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을 선정하여 할랄랩*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컨설팅 지원

* 할랄 인증시 제품검사(DNA·알콜 함유여부 등)를 담당하는 검사기관

다 상시 안전관리 강화

①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 휴·폐금속광산, 가축매몰지 등 오염우려지역 인근 농산물 안전성 및 실태 조사를 통한 위해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 차단

○ 계절별·품목별 특성*에 맞는 수산물 안전 관리

* 봄철 패류독소(3~6월),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5~10월), 겨울철 굴 노로바이러스(11월~익년 2월) 등

- '단속대상선별시스템*'을 활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하고 최근 3년간 5회 이상 위반업체는 특별 관리

* 과거처분이력, 3년내 점검여부 등을 토대로 업체 선정

○ 계란 권장유통기한 및 표시기한 설정 등 체계적 관리

* (표시기한) 산란일부터 10일 이내, (유통기한) 산란일부터 45일, 냉장조건

②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 원산지 거짓 표시 감시 강화

- 취약 품목별(쌀, 쇠고기, 배추김치 등) 및 시기별(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단속 집중 실시
- 원산지 거짓 표시 재범자(5년내 반복)는 1년 이상 징역, 5백만원 이상 벌금 부과하는 **형량하한제** 적용('17.6~)

식품 분야 형량하한제 도입 현황

시행시기	근거법령	주요내용
'17.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형을 선고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15.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허가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등 중요한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요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축산물위생관리법	
'14.7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은 1년 이상 7년 이하

○ 해외 원전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지속

- (일본 후쿠시마) 일본산 모든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 (러시아 체르노빌) 러시아 등 44개국 가공식품은 최초 및 무작위 검사시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사
 - 러시아 등 32개국 축산물은 검사대상 자동 선정(연간계획 100건 수준, 품목 유형별 1.35~7.0% 수준)

○ 국민 다소비 및 소비자 위해 우려 식품 등 중점관리 150개 품목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홈페이지·모바일 등 공개

* '17계획 : 8,400건(식약처 4,500, 농식품부 500, 해수부 980, 지자체 2,420)

③ 불량식품 근절

- 국조실, 식약처, 검·경, 지자체 등 29개 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운영(연중)
 -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실적 점검·보완, 불량식품 단속 사례 및 실적 관계부처 간 공유* 등 추진
 - * 불량식품 정보 분석 보고서(매월),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계획(매주)
- 범부처 합동점검 및 기획감시 강화(연중)
 - 원산지표시 위반 등 수입식품 관련 고질적 불법행위 등 국민 불안감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 집중 실시
 - 떼다방 등 암환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 거짓·과대광고 등 기획수사 강화

④ 기준·규격 재평가

- 환경오염, 식습관 변화 등을 고려, 오염물질·농약·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 지속 실시(5년 주기)

< 기준·규격 재평가 추진 현황 및 계획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오염물질	중금속 6종	곰팡이 독소 8종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MCPD, 멜라민
농약	40종	40종	40종	40종	42종
식품 첨가물	표백제 6품목	보존료 등 16품목	유화제 등 21품목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착색료 등 34품목
기구·용기· 포장	중금속 2항목	가공보조제 3항목	미반응원료 5항목	반응생성물질	오염물질 등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 국내 판매 승인된 동물용의약품(213종) 중 잔류허용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틸바로신 등 21종 잔류허용기준 고시

라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지역 지속 확대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100명 미만) 및 가정어린이집(20명 이하)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 센터 설치 및 어린이 수혜율 : ('16) 207개소(60%) → 216개소(70%)

** 가정어린이집 지원율(%) : ('16) 11,313개소(51%) → 13,200개소(60%)

○ 어린이기호식품 집중 관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입단계 검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무작위 정밀검사 비율 30% 이상 (일반수입식품 5%)

- 가격이 저렴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 식품안전 우려 업체 합동 점검('17.1, '17.4)

- 개학맞이, 어린이 날 등 대비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특별점검('17.3, '17.4, '17.8)

②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

- 전국 학교 조리음식 수거·검사 및 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지도·점검*('17.3, '17.8) 및 노후된 학교 급식시설 개선(매년 500여 개소)

*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적합 식재료 납품업체 입찰참여 제한(6개월) 및 불공정 행위 업체는 입찰참여 제한기간 연장(3개월 → 12개월)

- 식중독 발생 학교장·교육청 등 책임 강화 추진

* 식중독 발생 학교장 과태료 상향(500 → 1,000만원), 교육청 평가항목에 식중독 발생여부를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및 기관 포상시 불이익 부과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등 노로바이러스 집중 관리(연중)

* 조사건수 : 총 680건(평가원 및 지방청 360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320건)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17.5~)**
 - **음식점 위생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통일된 인증제도 도입(업계 자율)**
 - *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 3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제공 및 시설 개·보수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정착 후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
-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17.5)**
 - **라면이나 햄버거 등 구입시 해당 제품 나트륨 함량이 같은 제품 유형군에서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게 하여 나트륨 섭취 저감 유도**

③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확대**
 -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국에서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기준 재설정**
 - **비타민·무기질의 최대함량 기준을 재설정*하여 과도한 섭취로 인한 위해 방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17.12.)**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고시 전환**
 - **사업자 개별인정 후 6년 경과 등 고시 요건이 충족된 원료에 대해 전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17.12.)**
 - * 백수오복합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등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정착·확산 및 수출 지원**
 - **컨설팅 기관이 GMP 희망업체를 현장방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시(3~11월)**
 - **중국 인증기준 및 인증방법 등 정보 수집·제공**
 - * 중국 식약총국과 건강기능식품 제도 및 검사분야 실무작업반 운영(식약처)

IV. 향후 계획

- 식품안전관리 '16년도 추진실적 및 '17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
통보('17.4월)
 -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통보

- '17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현장점검 실시('17.5)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점검 추진